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발 의 자 : 송도호 의원 (찬성자 15명)
- 나. 의안번호 : 제 505 호
- 다. 발의일자 : 2023. 2. 6
- 라. 회부일자 : 2023. 2. 9

2. 제안이유

-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기존의 '청와대소방대'가 '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변경되어 소방관서의 용어 정의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내의 하부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서울시민 안전체험관'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2022.11.30.시행)으로 서울특별시 직속기관으로 편제·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소방관서의 용어 정의 정비 (안 제2조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서울특별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기존의 ‘청와대소방대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2022.11.30.시행)되어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이 서울특별시 직속기관으로 편제·신설됨에 따라 소방관서의 정의에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임.

[표] 개정안 수정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소방관서"란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 ,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 4. ~ 6.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소방관서"란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서울시민안전체험관, 대통령경호처소방대 ,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 4. ~ 6. (현행과 같음)

■ 주요골자별 의견

- 안 제2조제3호는, 기존의 ‘청와대소방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이 서울시 직속기관으로 편제·신설됨에 따라 변경된 사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청와대소방대 명칭 변경 관련

- ‘청와대소방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22. 05. 10.) 하면서 ‘청와대소방대’의 명칭이 ‘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여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 소방대 명칭의 경우는 해당 소방대에 근무하는 소방대원(44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정(2022.6.30.~7.28.)을 거쳐 `22. 7. 29. 일 ‘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결정되었으며,
-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의 기관명 사용승인(`22. 09. 01.) 을 받아 동년 `22. 11. 10. 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변경사항이 반영됨.

[표] 소방대 용산 이전에 따른 기관명 변경 추진 경과

- (**22. 05. 10.**) 소방대 이전 → 용산구 이태원로 22
- (**22. 07. 29.**) 소방대 자체 기관명 의견 수렴 → 대통령경호처소방대
 - 1안 (**대통령경호처소방대**), 2안 (금화소방대), 3안 (무궁화소방대)
 - ※ 1안 선정사유 : 소방대는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되어 VIP 집무공간 등의 안전확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22. 08. 29.) 기관명 변경(안)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보고
- (22. 08. 31.) 경호처 기획관리실, 1안 기관명 사용 가능 여부 검토
- (22. 09. 01.) 경호처 경비안전본부, 1안 기관명 “사용 승인”
- (22. 11. 10.)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516호) 개정

- 대통령집무실에 배치된 소방대가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어 집무공간 등의 안전확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명 변경 명칭 변경은 적절한 조치라 하겠음.

나.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신설 관련

- 소방관서에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소방본부 내의 하부조직으로 편제되어 운영되던 소방체험관이 시·도지사 직속기관으로 편제·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이는 `21.10.14.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소방체험관 관련 규정¹⁾이 신설되고, `22.11.10.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도록 직속기관으로 규정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1)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장 소방체험관 <신설 2021. 10. 14.>

제14조(설치 등) ① 시·도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제15조(관장) ①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소방체험관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②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체험관의 과·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